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43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 나. 장애인 보조기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 다. 2024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무명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동남,서북)
- 위탁기간 : 2024. 5. 1. ~ 2027. 4. 30.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923,124천원('24년 예산안 기준)
 - 동남(457,882천원), 서북(465,242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수탁기관 적정성심의)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률성 필요
 -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가 용이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 상담·평가 사례관리 사업
- 보조기기 보급, 대여 사업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사업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사업

-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 사업
-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성 향상 사업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협력지원팀 이진희 (☎ 2133-7465)